

청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가합20722 판결 [원인무효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말소]

전 문

원 고 A

可 고 1. B 종중

2. C 종중

변론 종결 2016. 8. 25.

판결 선고 2016. 9.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종중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종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 종중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7. 12. 접수 제98674호로,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3. 7. 12. 접수 제98675호로,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7. 6. 29. 접수 제49107호 및 2014. 1. 17. 접수 제7230호로 각 마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1. 신청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같은 날 접수 제46392호로 마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 종중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 3. 14. 접수 제323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종중은 D을 공동 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내지 소유자였다(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는 2013. 8. 17. 충북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8. 4.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해당일자에 피고 B 종중의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 3. 14. 접수 제32379호로 가등기권자 '피고 C 종중', 등기원인 '2014. 2. 28. 매매예약'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종중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 종중은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종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표자 명의 변경을 위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종중을 상대로

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원고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2013. 4. 11.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무효 확인 청구 부분

확인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종중의 대표자 명의 변경을 위한 2013. 4. 11.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등기신청행위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 청구 부분

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에 마쳐진 표시변경등기는 피고 B 종중의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것을 표상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각 표시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인 'B 종중'의 동일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게다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마쳐진 표시변경등기의 말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폐쇄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949 판결

참조), 위 토지의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토지에 마쳐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이 점에서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C 종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도 없이 위조한 회의록을 이용하여 피고 C 종중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C 종중은 원고에게 원인무효인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의 성격을 갖는 권리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려면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다거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B 종중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피고 C 종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묵, 판사 임택준, 판사 염혜수

별지

목 목

1. 청주시 서원구 E 전 385㎡
2. 청주시 서원구 F 전 4,340㎡
3. 청주시 서원구 G 전 349㎡
4. 청주시 서원구 H 전 160㎡
5. 청주시 서원구 I 답 2,674㎡. 끝.